

NYC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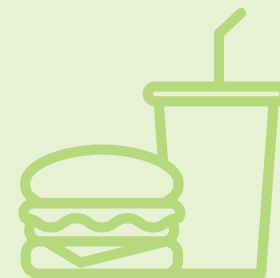
NYC Fair Workweek Law(공정 근로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예측 가능한 근로 일정과 더 많은 근로 시간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 부당한 해고는 법률로 금지됩니다.** 특히 고용주는 정당한 이유 또는 합법적인 경제적 이유 없이는 15% 초과 근로자 해고, 인원 감축 또는 근로 시간 감축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이 안내문을 NYC 내 근로 장소마다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법률적 정의

NYC 내 패스트푸드점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 청소
- 조리
- 고객 서비스
- 음식 또는 음료 준비
- 매장 외 지역 배달
- 정기 유지보수 업무
- 보안
- 자재 또는 장비 재고 정리

해당 법률은 이민자 신분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권리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 또는 근로 시간 감축 불가 (2021년 7월 4일 발효)

불법 또는 위험한 행동을 한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주가 반드시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근신 기간을 채운 근로자에게 재교육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근로 수준 미달인 근로자는 1년에 여러 차례 징계성 경고를 준 후에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 없이는 인원 감축 불가 (2021년 7월 4일 발효)

인원 감축은 가장 오래 일한 근로자부터 순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신규 근로 시간은 인원 감축된 직원 또는 현재 직원에게 우선 순위 부여

- 고용주는 매장 내 포스터를 게시하고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새롭게 생긴 근로 시간을 알려야 합니다.
- 고용주는 인원 감축된 직원이나 현재 직원이 신규 근로 시간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만 새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 근로 시간 감축, 인원 감축 시 서면으로 설명 (2021년 7월 4일 발효)



장기적 근로 일정을 서면으로 명시

근로 일정은 근로자가 예상할 수 있도록 매주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변경이 있으면 고용주는 변경된 정기 근로 일정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 일정 변경 시 2주 전에 통지

근로 일정은 역일 기준 최소 7일 동안의 근로 시간을 보여줘야 하며, 근로자의 근로 일정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한 변경 사항은 예외).



“영업 시작/종료” 근로 시간에 대한 \$100 추가 임금 및 거부 권리

영업 시작/종료 근로 시간은 매장을 열고 닫는 연속된 근로 시간을 포함합니다. 수락 시 추가 임금을 받게 되며, 원치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전 통지가 준수되지 않은 근로 시간 변경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 및 추가 근로 시간 거부

근로 시간 변경 통지	추가 근로 시간 임금	근로 시간 무변경	근로 시간 감축 시
14일 미만 통지	변경당 \$10	변경당 \$10	변경당 \$20
7일 미만 통지	변경당 \$15	변경당 \$15	변경당 \$45
24시간 미만 통지	변경당 \$15	변경당 \$15	변경당 \$75

근로 시간 변경에 동의해도 추가 임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임금 미발생 상황:

- 근로자 또는 고용주 자산에 대한 위협, 수도/가스/전기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 중단, 대중교통 폐쇄, 화재/홍수/기타 자연재해, 정부에서 선포한 비상사태로 인해 매장을 닫은 경우.
- 근로자가 직접 서면으로 근로 시간 변경을 요청한 경우.
- 다른 근로자와 근로 시간을 바꾼 경우.
- 근로 시간 변경으로 인해 고용주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보복 금지

법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근로자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보복을 당한 근로자는 즉시 DCWP에 연락하십시오.

이의 제기

법률 집행은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DCWP)에서 담당합니다. 자세한 정보 또는 이의 제기는 아래 방법을 이용해 주십시오.

- 웹사이트: nyc.gov/workers
- 전화: 311 (NYC 외 지역은 212-NEW-YORK)에 전화해 “Fair Workweek Law(공정 근로주법)”이라고 얘기
- 이메일: OLPS@dcwp.nyc.gov

DCWP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법률로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 DCWP에 이의를 제기하고 동시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